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8
----------	-----

제출년월일 : 1997. 1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시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4,000원을 10,000원으로 함.

□ 개정근거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2조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제17조

□ 조 례 안 : 붙임

□ 참고사항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타시·도 검정고시 수수료 비교표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000원' 을 '1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